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광역대표도서관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라!

경기도 최초의 도립도서관이자 광역대표도서관인 ‘경기도서관’의 민간위탁 운영 시도를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를 비롯한 도서관계는 강력하게 반대한다.

2024년 8월 22일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에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다. 2024년 12월에 준공 예정인 경기도서관은 최초의 도립도서관이자 광역대표도서관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기에 도서관계와 도민이 겨는 기대는 크다. 그러나, 경기도는 민간 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 및 도서관 서비스 강화”라는 허망지설(虛妄之說)로 그간의 도서관계와 1,365만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려 하고 있다.

세금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모든 공공도서관은 행정주체가 책임지고 운영 · 관리할 때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도서관법」 제4조 2항에 ‘공공도서관은 공 중의 정보이용 · 독서활동 ·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 설립과 운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는 뜻이다. 도서관 운영을 위탁한다는 것은 결국 이용자들이 위탁 운영 기관의 수익 창출을 위한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미 다른 위탁 도서관들에서 심각한 공공성 훼손 등 그 폐해가 드러난 결과 대부분 다시 직영으로 전환하였다. 이런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려는 경기도의 도서관 정책 추진 방향에 도서관계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경기도는 경기도서관의 민간위탁을 「도서관법」 제51조(권한의 위임 · 위탁)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를 근거로 하여, 2024년 제4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운영의 ‘적정’ 의견을 받아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경기도가 제시한 「도서관법」 제51조 제2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 · 도지사 및 시 ·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9조의 민간위탁 기준 제1항에서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소관사무 중 조사 · 검사 · 검정 · 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사무는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 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및 단순행정 사무이다. 경기도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이 조례를 근거로 주민의 권리 ·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으며,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및 시설관리 사무에 해당된다고 검토하여 ‘민간위탁 적정’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나, 경기도는 「도서관법」 제51조(권한의 위임 · 위탁)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크게 오해하거나,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해석하였다. 「도서관법」 제51조(권한의 위임 · 위탁)은 업무의 일부, 즉 단위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나, 광역대표도서관 운영은 업무의 일부가 아닌 업무의 전체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도서관법」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중 1.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 · 시행, 3.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4. 지역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에 관한 조사 · 연구, 6. 지역도서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입 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의 업무는 직접 수행하고, 필요시 민간 수탁기관과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의안 내용대로라면 경기도도서관은 법정 사무 중 2. 시 · 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 · 정리 · 보존 및 제공, 5.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 활동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관리만 수행할 수 있다. 「도서관법」의 광역대표도서관의 법적 사무가 조항별로 연결성 없이 분리될 수 있는 것인가? 법에 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로 규정한 내용을 무슨 근거로 전문성 없는 경기도의 행정직이 수행한다는 말인가?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17개 시 · 도의 광역대표도서관장 회의를 열고, 당해 도서관 정책 현안을 논의한다. 특히 올해는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에 따라 지역별 중장기 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만큼 지역별 도서관 발전을 위한 광역도서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였다. 광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국민의 지식문화 향유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도 광역대표도서관장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러한 정례 회의에 권한도 없는 민간위탁 광역대표도서관장이 참석할 것인가? 관장도 아닌 경기도 행정직이 참석하여 국가 도서관정책을 함께 논의할 것인가?

또한 경기도는 경기도도서관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적인 서비스를 위해 도서관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타 시 · 도 운영 사례로 서울의 광진정보도서관, 대구의 수성구립범어도서관, 경기도 성남의 중원도서관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광역대표도서관에 대한 경기도의 무지함과 그로 인한 행정의 오류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사례로 제시된 도서관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이며, 이들 도서관 운영의 법적 근거는 「도서관법」 제4장 제2절 ‘국 · 공립 및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법 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에 명시된 1. 도서관 자료의 수집 · 정리 · 보존 및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 자료의 상호대차, 5.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적절한 비교 대상이 아니다.

17개 시·도는 현재 광역대표도서관을 위탁 운영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고, 모두 직영하고 있다. 서울도서관과 충남도서관 등은 관장을 개방형직위로 외부 공모하여 채용하고 있으며, 전문임기제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직원의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경기도가 수년간 광역대표도서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조직과 인력 확보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경기도의 이러한 파행 또는 꼼수는 그대로 경기도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도서관협회를 비롯한 학계와 도서관 관련 단체 및 사서들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다음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경기도의회는 현재 상정된 「경기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라!
2. 경기도는 「경기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계획」을 철회하고, 광역대표도서관에 타당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라!
3.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역대표도서관의 위상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4. 국회는 악용의 소지가 높은 「도서관법」을 즉각 개정하라!

2024년 9월 4일

(사)한국도서관협회, 경기도사서협의회, 공공도서관협의회, 광주전남지구협의회, 국공립 대학도서관협의회, 대구경북지구협의회, 부산울산경남지구협의회, 서울시사서협의회,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사서분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서교사위원회,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전국전문대학문화정보학교육협의회, 전국학교도서관모임, 책문화네트워크,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포럼 문화와도서관,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도서관사연구회, 한국독서교육연구학회, 한국문화정보학 교수협의회, 한국문화정보학회,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한국서지학회, 한국신학대학도서관협의회, (사)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사)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한국학교사서협회